

자율방재의 생활화

경 제성장에 따른 도시구조의 복잡화와 건축물의 다양화, 대형화 등으로 인하여 화재의 위험요인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 주차난 등은 화재 진압의 어려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제도소방이 관리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자율소방체제의 구축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더욱이 단기간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소방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국민의 화재예방의식이 미처 따르지 못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 GNP, 건축허가면적 및 에너지소비 등의 소방여건은 최근 5년간 평균 14.3%씩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화재발생률은 13.3%로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 그것이다.

최근 청주우암상가아파트, 광주해양도시가스 폭발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들의 잇따른 발생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소방행정을 비롯하여 그와 이웃하고 있는 여러분야의 구조적 문제점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시설주나 사용자들의 인식이 아닐 수 없다.

92년 개정된 소방법에서는 이미 소방시설관리사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소방대상물을 1, 2급으로 구분하고 방화관리자를 그 기술능력에 따라 각각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점검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93년에 들어서는 소방대상물 중 소규모 건축물의 검사를 면제하여 소방시설관리사와 방화관리자의 자율점검이 실시되면서 각 지역별로 확대일로에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기업활동규제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최 용 복
한국소방안전협회장

유사직능의 통폐합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칫 잘못 이해되면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있을 우려도 있는데 최소한의 법규제는 최대한의 법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이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자체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을 대상으로 과거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경보설비의 설치율은 95%에 달하였으나 그 양호율은 3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양호율은 2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의 불량률은 6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소방시설점검의 필요성과 시설주의 남다른 책임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규제완화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한다면 시설주나 그 관리자들은 그 규제의 범주가 좁아진 데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해당 대상물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관리방법과 서비스를 연구, 스스로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율방재는 결국 소방대상물의 시설주가 스스로의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주 자신이 직접 안전관리에 나서는 것이 자율방재의 지름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제조업체는 과학소방, 기술소방의 실현에 부응하여 연구하는 자세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의 개발과 질적 생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형식에만 연연하여 법의 규제망만 벗어나면 그만이라는 태도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틈틈이 넘보고 있는 재난을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일어난 대형사고들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야 한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자신의 주변을 검토, 분석하는 자세로 화재예방을 생활화 할 때 우리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온전히 우리의 것일 수 있는 것이다.